

200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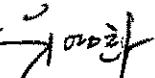
수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목 :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 건의문

위의 전의문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입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임 1. 의원서명서 1부.

2.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 건의문 1부.

발의자 : 유영화의원 (인) 
외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선 결	의 장	부의장
집수일시	2001. 12. 17. 일	국장
처장	제천시의회	임 관



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조례개정건의문(안)

의원서명서

의원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劉永和	劉永和	
이종호	이종호	
박재익	박재익	
임경원	임경원	

의안번호

744

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조례개정건의문(안)

발의년월일 : 2001. 12. 20

발 의 자 : 유영화의원외3인

1. 제안이유

- 98.4.30 제3대 기초의회 출범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시·군의회 의원정수) 제1항 및 동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확정) 제2항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개정된바 있어
- 98.5.6. 충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 제2대의회 21개 선거구 22명 의원이던 것이 제3대 의회에서는 14개 선거구 14명 의원으로 감축된바 있음.
- 개정후 4년이 가까워 오는 현 시점에는 인구의 이동 상황등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법상에서 제시한 5천명 이상을 충족할 여건이 되었으므로 선거구를 분리하는 한편 의원수를 늘리고자 도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임.

2. 주요골자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의한 별표“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개정
 - 내용 : 현행 14개 선거구 14명 의원정수를 2개 선거구 2명 의원을 늘려 16개 선거구 16명 의원으로 함

현 행	개 정
○ 중앙동.남천동.화산1동.화산2동 선거구	○ 중앙동 선거구
	○ 화산동 선거구
○ 명서동.의림동.영천1동.영천2동 선거구	○ 명서동.의림동 선거구
	○ 영천동 선거구

※ 참고 (2001.11월말 주민등록상 인구)

선 거 구 명	인 구 수 (명)
○ 중앙동	5,931
○ 화산동	9,990
○ 명서동. 의림동	9,559
○ 영천동	5,200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조례 개정건의문(안)

충북도정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진호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사적 출범을 맞은지 어언 10년이 경과하면서 기초 의회도 3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과를 가려 제4대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엄숙한 마당에 앞서 사필귀정, 뿐만 아니라 거두리라는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의원 모두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집주하고 있는 터입니다.

금번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지사님과 의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대 기초의회 선거에 앞서 98.4.30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 제1항 및 동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확정) 제2항의 근거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되어있어 동법 시행령 제3조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의 선거구 명칭)를 수용하면서 98.5.6. 충북도에서는 시·군의회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천시의회는 제2대 의회에서 21개 선거구 22명의 의원이던 것이 제3대 의회에서는 14개 선거구 14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천시는 행정동 통합과 함께 인구 상황도 많이 변하여 현행 선거구중 “중앙.남천.화산1동.화산2동 선거구”와 “명서동.의림동.영천1동.영천2동 선거구”는 일부를 분리한다고 하여도 법에서 정한 5천명 미만의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중앙.남천”과 “화산동”으로 하고 “명서동.의림동”과 “영천동”으로 분리하여 2개 선거구를 늘린다 해도 행정동 단위로 5천명 이상이 되는 합법적인 선거구를 구성할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나 각당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치를 예정인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등 선거관련 법령들에 대한 개정준비를 서두르고 속속 그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 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 조례의 개정이 다소 난망하기는 하겠으나 현행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즉, 현행법과 조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의 개정요구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모름지기 이제 막 굳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는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이려니와 중앙과 상급자치단체로 부터의 부단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부디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며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24일
제천시의회의원 일동